

#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운영내규

제정 2016. 9. 23

##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내규는 경북종합체육대회 규정 제32조에 의거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경기운영

**제2조**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이하 “본 대회”라 칭함)의 모든 경기는 해당 종목단체 책임하에 이를 진행한다.

**제3조** 본 대회의 경기는 해당 종목단체의 경기규칙(생활체육 규칙 포함)에 의하여 제3장과 같이 운영한다.

**제4조** 본 대회의 경기일정은 당해 종목단체가 작성하며, 경북체육회가 이를 결정한다.

## 제 3 장 경기방법

**제5조** 시 대항 및 군 대항으로 진행한다.

**제6조** 본 대회 경기는 개인경기와 단체경기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단체경기는 단일팀 또는 혼성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단체전은 시드제를 적용하고 개최지역만 시드를 배정한다.

**제7조** 본 대회의 종목별 순위는 해당 도종목단체가 제정한 채점규정에 의거 채점하여 종목별로 시·군 순위를 결정한다.

**제8조**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은 시·군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9조** 토너먼트 경기에 있어서는 순위전(3, 4위전, 5~8위전 등)은 행하지 아니하고 무승부일 경우는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승부를 결정한다.

## 제 4 장 경기기록관리

**제10조** 본 대회의 모든 경기기록은 경북체육회가 재제정한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해당 종목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책임자가 확인서명하여 대회본부 기록부장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 5 장 심판 및 소청

**제11조** 본 대회의 종목별 경기심판은 해당 경기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며 그 종목단체가 지정한 심판이 담당한다.

**제12조** 본 대회의 소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해당 경기 주심에게 1차 이의신청
2. 주심의 판정에 불복시는 경기종목별 심판부장에게 이의신청
3. 경기종목별 심판부장의 판정에 불복시는 판정서를 첨부하여 대회본부 심판부장에게 이의신청
4. 대회본부 심판부장의 판정에도 불복시는 대회본부 소청심의 위원회에 소청. 단, 소청서는 시·군선수단의 총감독이 서명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소청심의 위원회에는 해당 시·군선수단의 총감독과 해당경기단체 심판부장만이 참석한다.

**제13조** 대회본부 소청심의위원회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며, 판결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